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4차)

개최일시	2019. 5. 3. (금) 15:00~17:10	회의장소	대학원별관 204호
참석자 (11명)	강미리(동아리연합회 회장), 김선우(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 김세빈(사범대학 공동대표), 백옥경(학생처장), 유세경(기획처장), 이민하(학부 총학생회장), 이상은(삼일회계법인), 이준엽(관리처장), 최혜련(예산팀장), 한은서(학부 부총학생회장), 홍기석(총무처장)		
불참자 (2명)	강동범(교무처장), 김다연(대학원 학생회장)		
안건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		
내 용	<p>■ 개회</p> <p>관리처장이 지난 3차 회의 때 임시 위원장을 맡기로 했음을 언급하고, 예산팀장이 회의록 작성 일정에 대해 안내하다. 위원장이 총 13명의 위원 중 11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를 위한 과반수 참석의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p> <p>■ 회의내용</p> <p>1. 논의사항</p> <p>가. 학부 학생위원 요청사항 관련 논의</p> <p style="padding-left: 20px;">- 관리처장이 지난 3차 회의에서 학부 학생위원들이 요청한 사항 중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에 대한 논의 경과를 먼저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하다.</p> <p style="padding-left: 20px;">- 기획처장이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진행과정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4월 30일 학·처장 회의를 별도로 소집했다고 말하다. 집행 내역 공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타 학교도 공개하는 추세라고 전달했으며, 단대 행정운영비인 20% 외에 80% 정도의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내역에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하다. 공개 범위, 공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가 공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말하다.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중앙운영위원회와 공유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다.</p> <p style="padding-left: 20px;">- 학부 총학생회장이 공개 여부부터 논의하는 건지 질의하다.</p>		

- 기획처장이 대부분 학장들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다고 말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대학별로 논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주로 구체적인 공개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단대별로 공개할 경우 사범대학의 경우 소속 학과마다 등록금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전공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의 전공별로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면서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본격적으로 등심위 운영 개선에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다. 이번 등심위는 1차 회의 때 학생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어 제안한 자리임을 밝히고 전반적인 제안 내용이나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하는 내용을 대표로 발의하기를 요청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요구안을 위원들에게 전달하다. 1월에 요구했던 사안들이랑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요구안에 대해 설명하다. 첫 번째로 학생 측 외부전문가 선임 허용 및 위원으로 포함, 두 번째로 등심위 참관 및 참관인 발언 허용, 세 번째로 충분한 자료 분석을 위해 학교의 재정 계획이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발전계획서 등을 공개하는 학교도 있어 추가 자료 제공을 요구하다. 마지막으로 재적위원 1/4 이상이 요구 시 차기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요구하며 주요 요구안 설명을 마친다.

#### 나. 등록금심의위원회 추가 자료 제공 관련 논의

- 기획처장이 쉽고 명확한 것부터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충분한 자료 분석을 위한 실질적인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성균관대의 경우 등록금 산정 시 고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의존율,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주요 대학과의 비교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정보 공시를 통해 이미 공개가 되어있는 사항이라고 말하며 추가 제공을 요청하는 것인지 질의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은 4월에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정보공시 자료는 전년도 기준 자료이며, 해당 내용에 대

한 공개가 가능함을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4월 전에는 해당 연도의 자료 공유가 어려운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은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은 결산이 확정되어야 나오는 자료임을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정보공시로 공개되는 것이라도 학생들이 찾아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표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다. 예산팀장은 공시된 자료를 가지고 타 대학 비교 등 별도 자료를 만들어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타대에서 무엇을 공개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등록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지표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등록금 책정근거가 되는 자료이니 객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미래 자료를 제공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타 학교도 직전년도를 반영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교육비환원율, 등록비의존율이 대외 지표이기 때문에 타 대학과 비교해서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관리처장이 언급한 것은 다른 조항이라며 학생들이 언급한 것은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이라고 정정하다.

- 학교 위원들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 제공에 대해 동의하다.

**• 합의사항**

- 추후 등심위 부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등록금의존율, 교육비환원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주요 대학과의 비교 등의 등록금 산정 근거를 별도의 표로 만들어 제공하기로 함.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를 요청했을 때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록금 산정 기준 공개 시 차등등록금에 대한 자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모든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이 차등화 되어있고 공개 여부를 떠나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말한다. 수업, 교육 방식, 공간 등과 관련

하여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도 차등등록금의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부정확하게 공개를 했다가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실험실습비에 대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차등등록금, 특히 예술계열 등록금이 1.5배인 이유가 사회적 정서나 합의라고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한다.

- 기획처장은 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원 인건비, 학생경비, 관리비용이라고 말하며 조형예술대학은 인문과학대학 보다 실습 과목 비율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지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수업구조가 있기 때문에 정서와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히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조형예술대학 소속임을 밝히며 작년에 조형예술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의 자료조사에 의하면 수십 년 전에 대학이 처음 생겨나 등록금을 산정할 때 명확한 근거가 없이 등록금이 낮은 편인 곳을 1로 하고 자연대 1.2 조예대 1.4 이런 식으로 그냥 책정을 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예술대학 네트워크 조사 자료도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예측이고 주장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 당시에라도 나름의 방식에 의거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하지 단순히 정서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 때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수십 년 전에 책정된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상승했지만 여전히 그 퍼센트는 변하지 않은 것 같으며 예전에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정되었다고 해서 아직까지 유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예술대학생 네트워크의 자료가 정확한 근거나 데이터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지금도 모든 대학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사회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다고 말한다. 등록금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인데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고 기획처장의 학교 측에서는 중요한 문제더라도 우리 학교만 자료를 주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한다.

결국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앞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학점, 실험실습비 등 여러 항목을 언급했는데 이를 전공별로 정리해 근거를 앞으로 만들어나가고 이를 토대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차등등록금의 문제점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질의하고, 동아리연합회장은 차등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지금 각 단대별로 취득하는 학점도 다르고 수업 중 교수 1인당 학생 비율 등도 달라서 각각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차등등록금이 학과별, 단대별 특성에 따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학생들이 느끼기에 적당한가의 문제라고 말한다. 자연과학대학의 경우에는 모두 등록금이 같지만 실험 여부가 다른데, 차등의 이유가 실험실습비 때문이라고 하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그 근거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말한다. 실험실습비 외의 근거를 요구했는데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복잡하게 되어있다는 등 추상적으로만 답변하면 학생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공대의 경우 연구실도 많이 쓰고 실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차등등록금에 대해 추측은 가능하나 학생들이 이를 추측을 해서 납득하길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말한다. 학생들은 내가 낸 등록금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합리적으로 책정이 된 건지 알기를 바라는 것이며 등심위가 제대로 등록금을 심의하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다.

- 사범대 공동대표는 자료를 정리하기 어렵다고만 하면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으며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그렇다면 현재 제도가 합리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어떤 기준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학생들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복잡해서 공개할 수 없다면서 학생들에게 그 기준을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다고 지적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 기준을 왜 학생들에게서 찾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묻는 것이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예를 들어 사회적 정서도 비합리적일 수 있지만 근거가 될 수는 있다며 학생들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큰 원칙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정말 사회적 정서가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반문하자 학교 위원들은 그것은 예시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하버드의 높은 등록금도 평판도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평판도도 등록금 책정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외국의 경우 등록금의 근거가 평판도인 경우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동의하고 합의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은 지표화하여 공시하기 어렵다고 덧붙인다. 이에 학생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이 자리에서 학교 위원들이 언급한 것들만 공개를 하고 통계를 내도 학생들이 조금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선적으로 실험실습비가 좀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외에 졸업이 수 학점, 수업 시수, 실험이나 실습 수업 비율, 해당 과 또는 단대의 전임교원 확보율 등을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각 단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 달라는 것인지 질의하고, 총무처장은 원가를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무슨 말인지 알았다며 그러한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지표부터 차근차근 좁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서울대와 그 외에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등록금 원가계산을 해보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공식화, 현실화 되지 못하는 이유는 등록금이 한 가지로 비용의 측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크게 강조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질의했던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다. 현재 등록금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로 지난 10년 동안 가격조정이 되지 않은 것이 큰 문제일 것 같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만약 등록금이 인상된다면 어떻게 인상을 다르게 할 것인지 따져볼 텐데 10년 동안 동결이었기 때문에 논의할 일이 없었다고 말하며, 현재 시점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한다. 모든 등록금이 똑같기는 어렵다는 건 학생들도 동의할 것 같으니 이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자료를 더 잘 준비하고 등록금에 대해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과 동결만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만약 실험실습비가 공개되었는데 합리적이지 않다면 해당 단과대학의 등록금이 인하되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아닌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전체 수입에서 등록금 수입이 약 50% 정도이며 기금을 인출해서 목적 사업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 등록금 수입만으로 학교 운영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수지만 본다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임을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적어도 차등등록금의 근거가 실험실습비라고 한다면 그 내역을 공개해 합리적이지 않다면 이를 바탕으로 차등등록금을 개선해야 된다는 뜻이었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은 계열 간 등록금의 차이에는 실험실습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을 위한 공간, 인력, 시설, 안전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한다. 기획처장이 심지어 전기료도 건물마다 다를 것이라고 덧붙인다.

- 총학생회장은 차등등록금을 시행할 것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학교 위원들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산정 근거를 밝히려는 학생들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불가능하다고만 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점진적으로 논의해서 명확한 것부터 좁혀보자고 한 것이라며 학교는 진정성 있게 최선을 시도해 보려고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 총무처장이 학교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 인데, 10년간 급여도 동결에 가까운 상황이며 학교는 효율적으로 지출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등록금 책정 시에 물가상승률이나 도시가구평균소득 등을 고려하게 되어있는데, 물가상승률이나 도시가구평균소득은 계속 상승해왔음에도 등록금은 동결되어 왔다고 말하며, 등록금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러한 것들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인다.

- 관리처장은 학교 상황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등록금의 인상이 가능하다면 인하도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다고 하다. 하지만 한 대학에서 단지 실험실습비만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등록금 삭감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며 학교 재원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인하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0년 전부터 반값등록금을 외쳤는데 지금도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고 말한다. 지금도 여전히 학생들은 힘들어 하고 있다는 걸 학교에서도 알아줬으면 좋겠고 등록금과 장학금 문제를 고려해달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재정계획 관련해서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한다. 퍼센트나 금액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도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그랬기 때문에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상비로 지출되지만 정책 관련한 비용도 있어 그런 부분은 사업 계획, 배경 등을 한 페이지로 요약해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해당 자료는 등심위에서도 제공하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차등등록금 관련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공개할 의사가 있다는 것인지 재차 확인하다.

- 기획처장이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고 지금부터 진행을 해보겠다는 것이지 지금 지표를 만들어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당장 근거를 만들어서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등심위가 아니더라도 추후에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세부 데이터를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관리처장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그렇다면 그 자료는 어느 부서에서 만드는 것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아직 초벌 논의만 진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학교 전체가 자료를 모으고 등록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지 어느 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른 안건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 합의사항**

- 추후 등심위부터는 사업계획서도 추가 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

- 차등등록금 산정 근거에 대해 자료나 지표를 당장 마련할 수는 없으며, 검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

**다.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관 관련 논의**

- 기획처장이 참관과 참관인 발언 허용을 요구하는 목적과 필요성, 참



관인의 범위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등심위의 학생 위원들이 6명이 고, 각 위원들이 대표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관을 따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으며 학생위원들이 생각하는 큰 장점과 단점에도 불구하고 제안하는 이유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언급한 단점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기획처장이 필요성부터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예결산, 등록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굳이 학생뿐 아니라 학내 구성원 중 직접 이 회의에 오기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는 참관을 허용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하다. 기존 등심위를 진행할 때에 병원 등에서 위원이 아닌 사람이 올 경우 설명할 때만 들어오고 의결은 나간 다음에 진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필요성이 따로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본질적으로 위원회가 참관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인지 질의하자, 학부 총학생회장은 그렇다고 답하다.

- 관리처장이 학생들은 위원회라면 다수가 와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만 참여 가능하거나 위원이 아닌 사람들은 참가해서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의결할 때는 나가야 하는 등의 위원회 운영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다.

- 기획처장은 의결을 진행할 때 위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무언의 압박이나 심리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도 그것은 싫지 않겠냐고 반문하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의결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말하다.

- 학생처장은 참관을 허용하자고 하는데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인원 수에 관한 부분인지 질의하고, 관리처장은 인원 수나 참관인의 대상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구체적인 것은 합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인원이라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한 뒤야 한다고 하면 신청을 받는 방식도 있다고 말하다. 대학평의원회의 경우 2017년 차기 총학생회장이 차기 대학평의원이기때 참관을 허용한 바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대표자에 한해 사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했으나 차기 총학생회장 외에는 근거 없이 승인이 거절된 바

있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참관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며, 학부 학생위원들은 등심위가 비밀위원회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참관을 허용해야하는 위원회인데 왜 참관을 불허하는지를 궁금해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참관인은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등심위는 대표자들이 위임을 받고 온 것인데 참관인이 따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그 사람만 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한다. 대표자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대표자의 의견에 따르기만 하거나 그저 전달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의결권은 없어도 등심위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 이러한 분위기는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며 알 권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그런 부분들은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충분히 알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관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좀 더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자 학생처장은 이미 충분한 것 같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의록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관과는 다르며 참관을 하게 될 경우 분위기, 말투, 입장차이가 더 명확하게 보일 수도 있는 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따라서 회의록뿐만 아니라 참관을 통해서 투명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참관인이 있다면 위원이 발언하는 데에 있어 더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참관인의 범위는 강사, 노동자 등 학내구성원이라면 참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현재 등심위가 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의록이 각 본인의 발언만 수정 가능하여 자신이 장내에서 들은 맥락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그것이 양날의 검이라고 말하며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여 회의록을 자세하게 작성하고 공개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참관인이 다른 말을 할까봐 우려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소통하는 데에 있어 그러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그러한 불필요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이 참관 이후 다른 의도로 해석해 회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 부작용이지, 그저 참관만을 하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지 않냐고 말한다. 기획처장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이 현재 서기록은 학교 학생 양측이 번갈아 가며 쓰고 자신이 한 발언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지 발언 자체를 고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양측 서기록을 비교해 보았을 때 상이하다면 날인 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회의록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지점에서 참관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뜻이었다고 말한다.

- 총무처장은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상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이야기 하는 것이겠지만 지금도 등심위가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관을 허용했을 때 편익이 얼마나 늘어날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회의록과 관련하여 본인이 말한 의도와 다르게 적혀있으면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전에는 최종 합의 사항으로 회의록을 작성했는데 참관 논의가 나오면서 참관을 허용하는 건 어려움이 있으니 회의록을 자세하게 작성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회의 중 논의에 집중하다보면 토론이 격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회의록 작성 시 본인의 발언에 한해서는 맥락상 사족이거나 삭제해도 문맥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인 요청 하에 삭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학생 위원 입장에서 동의할 수 없다면 해당 삭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이 그러한 경우 양측 서기록을 대조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예산팀장은 우리 학교 회의록은 거의 모든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한다. 회의록은 날인 후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동의했던 것이 아닌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이 아니며 학생들도 굳이 크게 대응하진 않았지만 지난 1월에 진행한 등심위에서 '아니다, 내 말이 맞다'는 식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사족이 아니었고 학생들의 발언을 막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더불어 그 문장이 없어지면 맥락상 없어지면 이상한 부분도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말한다. 회의록이 자세하데 일부분이 삭제되면 맥락이 이상해져서 참관이 안 되어 회의록만 확인한 자의 경우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그렇다면 삭제 요청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고 소통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다. 예산팀장은 이견 있으면 해당 위원에게 다시 질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매일 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비책 또한 앞으로의 등심위를 위해 필요한 논의인 것 같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회의록에 발언자가 삭제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내용을 회의록에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그렇다면 해당 발언이 명시된다는 것인지 질의하고, 관리처장은 적혀지는 것은 아니나 다음 회의 때 공개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부 총학생회장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우선 삭제에 대한 부분만 합의를 하고 수정에 대한 부분은 더 합의지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회의록이 아무리 자세하다고 해도 참관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참관을 할 경우 개개인이 다르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라면 왜 꼭 참관이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회의록에 관해서도 길게 논의했는데 참관의 경우 오해가

생긴 부분이 확산될 위험성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발언에 책임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합의점으로 다른 중앙운영위원 대표자의 참관은 가능한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누가 되었든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의록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투명성 증진보다도 다른 우려지점들이 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몇 명이 더 참관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학생들이 원하는 투명성은 회의록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무엇을 더 원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으로 중앙운영위원들이 참관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학교 위원들이 말했듯이 대표자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적어도 중앙운영위원은 실제로 등심위에 참관해 어떤 식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학평의원회에서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취지는 이해하나 인원이 늘어난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는 이미 학생 위원이 많은 편이고 인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말한다. 참관과 투명성이 논리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단순히 투명성뿐만 아니라 대표자들은 직접 자리에 와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안에 단대 요구안도 있는데 일부 학생 위원들로는 설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참관인 발언 허용까지 해달라는 것인지 질의하자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처음부터 요구안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이 부분은 정기협의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며 등심위는 단대 요구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다면 발언을 하지 않고 참관만 해서 등심위 자리를 이해하는 것은 가능한지 질의하자 관리처장이 등심위를 견학의 장소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 외부전문가 위원이 이렇게 투명하게 회의록이 공개되는 회의는 일반

적으로 거의 없다고 말하며, 회의 자료 또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장내에서만 공개되고 있는데, 학교와 병원의 재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인다.

- 관리처장이 참관을 허용한다면 앞으로 공개되기에 민감한 부분을 논의할 때에는 참관인에게 퇴장 요청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인지, 또는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아예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질의하다. 두 번째로 회의 도중 참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참관 허용이 되지도 않았는데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지 반문하다.

- 기획처장이 자신은 참관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학생 대표가 한 두명이 더 온다고 해서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학생위원 규정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심각한 문제나 은폐성이 없는데 학생위원들이 참관과 참관인의 발언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하며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록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한다. 단대 요구안의 경우 등심위 안건이 아니며 이제 정기협의체가 생긴다면 학교와 소통할 기회가 많아지니 굳이 등심위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등심위에서는 학생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학교에서도 자료를 더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한다. 정기협의체에서 다른 부분을 더 논의하면 되지 않냐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그렇다면 등심위는 위원이 정해져 있고 예결산이나 등록금을 심의해야 하니 참관이 어렵다면 정기 협의체 참관 고려가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정기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직 잘 모른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작년 대외이미지취업고시 협의체의 경우 20명의 참관인을 둔 적이 있으며 지금도 학생처 통해서 공문을 발송했고 논의되는 대로 회신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등심위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한다. 학생처장은 일단 논의해 보고 답변을 할 것이며 정기협의체에서 참관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좀 더 많은 학생들이 협의체 자리에 와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등심위에서 참관 허용이 안 되는 이유가 그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면 정기 협의체는 학생 요구안 전반을 다루

는데 참관 허용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 학생처장은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한다. 외부전문가위원이 말했듯이 학교 재정상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어서 등심위 참관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학생위원들이 대표성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등심위의 참관 허용은 어려울 것 같고 정기 협의체 참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 아님을 말한다.

- 관리처장은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이번 안건은 충분히 논의를 한 것 같으니 넘어가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마지막으로 정기협의체 관련해서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며, 협의체에서는 민감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니고 학내 사안 전반을 다루는 기구인 만큼 인원제한을 두더라도 의제별로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참관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학생처장이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짚고 싶은 것이 있다며 참관 논의가 소모적인데 열린 회의체란 무엇이나를 지금 더 논의하는 것은 의견이 너무 달라서 무의미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추후 위원이 바뀌면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결론적으로 학생위원들이 참관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한다.

#### 다. 재적위원 1/4의 요구 시 차기 개회 관련 논의

- 관리처장이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차기 회의를 개최해달라는 요구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번 1월에 진행한 등심위에서 보통은 4차까지 하는데 교무처장 일정상의 이유로 2차 회의만을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합의사항이 없다보니 개최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이 요구안은 타 학교 규정에 이미 꽤 명시가 되어있는 현황이라 이를 참고했다고 말한다. 등심위가 2차 만에 끝났던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정족수를 바꾸자는 것은 아니고 요구 시에 개최해달라는 것이라며 2차 회의 만에 심사가 끝난 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예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요구할 때 실무부처와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사회가 압박한 상황에서 처장들은 그 자리에서 수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

식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학생처장이 보통 등심위가 얼마나 개최되는지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보통 1월 초에 시작하며 2019학년도에는 1월에 2회를 개최하였다고 말한다. 등심위 개최의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예년의 경우 추경예산(안) 심의, 예산(안) 심의, 등록금책정을 3차례 회의에서 다루어서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횟수는 사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5월에 등심위가 열린 것이라고 말한다. 솔직히 학생들은 민주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학교는 이 요구안은 위협적으로 느껴진다고 학생위원이 요구하면 무조건 개최해야 하는 부담감, 압박감이 느껴진다고 말한다. 중요한 심의 안건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횟수는 상호 협의해서 보완을 할 부분이지 이 요구안을 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왜 위협적이라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원래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나 의장에게 있는데 이를 다른 회의 구성원이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이 요구해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말한다. 위원장에게만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개최 요구권이 있는 위원회는 많지만 현실적으로 등심위 일정이 정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3월에 진행하고자 했던 등심위가 이리저리한 이유 때문에 5월로 늦춰진 측면도 있다고 말한다. 취지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간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개최 규정이 명문화 되어있는 것인지 질의하며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요청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하다.

- 관리처장은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이 부분은 교무처장이 위원장이기도 하고 법학과 교수이기도 하니 학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묘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위원장과 함께 논의해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제안하다. 개인적으로 이를 명문화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잘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경희대의 경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재적위원 1/4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가 꽤 많다고 말한다. 학생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월 사례도 언급했지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운영 개선 관련 등심위나 실무협의회를 합의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굳이 이 조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등심위 관련해서 별도로 실무협의회를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합의점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다. 실제로 운영 관련이나 학생들의 요구안에 대해 먼저 논의하는 학교도 있고 예산을 미리 보는 학교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등심위를 정해져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개최하는 곳들이 있어서 열어두고 생각해 달라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오늘도 별도의 상정 안건 때문만 아니라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위원들이 합의해서 개최한 것이니 규정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면 개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규정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개최하도록 되어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사항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사범대학 공동대표는 합의지점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한다. 기획처장은 이 부분은 위원장이 회의 소집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심위 추가 개최, 실무협의회와 관련해서 논의 후 서면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 질의하다. 기획처장이 추후 서면으로 학생처를 경유해 보내겠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규정에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에 있는 것인지 질의하다. 예산팀장은 내규라고 답하고,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자 다음에 공유하겠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내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는 것인지 질의하고, 관리처장이 내규는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위원들에게는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다른 학교의 경우 등심위, 대학평의원회 규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며 내규는 원래 공개하지 않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내규는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원래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하고, 학부 총학생회장은 대학평의원회는 게시가 되어있는데 다른 점이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평의원회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등심위는 관련 법을 따르고 있으며 내부 규정으로는 세부적인 걸 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관련 법에 근거 하였으며 추후 공유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은 위원들이 내규를 모르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내년부터는 미리 공유해 달라고 말한다.

• 합의사항

- 재적위원의 요구 시 추가개회와 관련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함.
- 실무협의회는 학생처에서 논의 후 추후 답변하는 것으로 함.

라. 학생 측 외부전문가 선임 관련 논의

- 관리처장은 마지막 안건인 학생 측 외부전문가 선임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예전부터 요구해 왔던 것이고 1월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학교는 학생 측 외부전문가 추천위원을 다양하게 두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학교 측 외부전문가 위원이 있는 것이 학생 측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한다. 학교 측 위원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협의 과정에 학생들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외부 전문가 1인으로 되어있고 위원을 홀수로 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등심위에서의 외부 전문가의 역할과 전문성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한 명을 선임하는 것은 구성에도 적합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말하며 다른 외부전문가를 추가로 선임해 짝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의결권이 없는 학생 측 외부전문가나 외부전문가가 3명인 경우, 협의과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다. 관리처장은 그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예산을 심의하고 회계를 분석하기에 학생들이 부족한 지점이 있어 동등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외부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라면 지금 있는 외부전문가위원을 먼저 만나서 논의해 볼 것을 제안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여기 계시는 학생위원과 교직원위원 그리고 본인 또한 학교를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한다. 외부 전문가는 학교의 동문으로서 빅4회계법인의 임원으로 선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하지만 동문이면서 빅4회계법인의 임원으로 계신 분이 많지 않아 한명을 더 추천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외부 전문가 위원 후보를 정리해서 학생들이 인터뷰 후 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선임과정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은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후속 위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다음에 반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한다.

- 관리처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현재 위원들이 다 모인 것이고, 외부전문가위원 역시 학교 발전을 위해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등록금을 보는 관점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학교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위원이라면 누가 추천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해 대학생으로서 투쟁하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밖에서 요구하는 것과 등심위 위원으로서 요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등심위 안에서 외부위원에게 어떤 역할 기대를 하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 그런 분야의 외부위원들을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부위원의 다양성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등심위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부정적인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외부전문가의 사회적 담론까지 등심위 안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회의 운영인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은 4대 회계법인에서 임원의 지위를 가진 동문 외부전문가 풀에서 추천을 하면 학생위원이 미리 만나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측 외부전문가 선임에는 다양한 안이 있을 것이라며 여태까지 학교에서 추천해 왔는데 사전에 학생들도 어떤 외부전문가가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발전적이라고 말한다. 전문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반영되는지의 문제라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한 학교에서 위원의 이력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신상을 과도하게 침해한 적이 있어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 동아리연합회장은 그 사례는 학생들이 제대로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오히려 학생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반증이 되는 사례라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그렇다면 다음에 언제 선정하게 될지는 모르는 것인지 질의하고, 예산팀장이 외부위원은 선임이 어려워 보통은 연임을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현재 외부 위원이 사임을 표명하여 신입 외부 위원을 선정하게 되면 최종 선정전에 학생위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한다.

- 학부 총학생회장은 보통 선임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은 외부위원으로 모실 수 있을만한 분을 조사하고, 의사를 타진하고, 내부결재를 받아 위원을 선정함을 말한다. 차후에도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며 차기 신입 외부위원 선정시점은 언제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 기획처장이 합의가 된 것이니 다음에도 이 회의록을 보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다.

**• 합의사항**

- 차기 등심위 부터 신입 외부위원 선정 시 학생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 합의함

**마. 기타 사항**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이전 등심위에서도 회의록에서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발언 비공개 의결 법칙도 있다고 말한다.

- 예산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원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비공개 의사 표명을 하고 발언하면, 위원들의 이견이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되지 않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회의록에 모두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필요한 내용이거나 발언자의 의지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가 있으면 그것을 차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지 제안하다.

- 기획처장이 비공개 의사표명을 하고 발언하는 것도 발언 후 기록여부에 대해 의결을 해야 하면, 자유로운 발언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 엘텍공과대학 공동대표는 장내에서는 공개를 전제로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p>- 기획처장이 공식적인 회의 장내에서는 공개를 전제로 발언하고, 개인의 신상에 대한 내용은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도록 해야 겠다고 말한다.</p> <p>-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에 개인 신상에 관한 일,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공개가 적당하지 않다고 의결한 사항 등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들이 명시되어있다고 말한다.</p> <p>- 관리처장이 현재 회의 운영에서 모든 내용이 녹취록처럼 발언이 전체 공개되어야 한다면 자유롭게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안건마다 동의하고 제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학교 등심위의 회의 진행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고, 회의록에 최대한 분위기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이기에 매 발언 건마다 삭제여부를 의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다.</p> <p>- 기획처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얘기했는데 사안이 중대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의결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회의 장내에서 조정하고 끝내는 것을 말한다.</p> <p>- 관리처장이 회의 진행 중에 비공개 의사를 밝히고 발언을 하면 원칙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엔 합의 후 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위원 모두가 동의하다.</p> <p>■ 폐회</p> <p>- 관리처장은 위원회를 정리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p>
<p>확 인</p>	<p>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right;">2019년 5월 3일</p>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강동범	불 참	위 원	이민하	이민하
	위 원	강미리	강미리	위 원	이상은	이상은
	위 원	김다연	불 참	위 원	이준엽	이준엽
	위 원	김선우	김선우	위 원	최혜련	최혜련
	위 원	김세빈	김세빈.	위 원	한은서	한은서
	위 원	백옥경	백옥경	위 원	홍기석	홍기석
	위 원	유세경	유세경			
작성 자	학부 총학생회장 이민하 <i>이민하</i>					